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4 - 10호

2024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4년도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모집하고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기업 :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제조업 중소(중견)기업으로써 울주군 청년을 인턴 및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 인턴 : 인턴 신청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지원규모** : 인턴 50명 채용 ※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한도** : 상시 근로자 수의 20%(단, 기업당 최대 5인 지원)

※ 상시 근로자 수 :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피보험자 수에는 전년도 인턴 연수 중인 자를 제외하되 정규직 전환자는 포함

※ 참여기업 모집 결과에 따라 최대 지원 인원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기업 : 채용 인턴 1인당 월 80만원 최대 9개월*간 지원

*예) 인턴 1개월 약정 시, 인턴 1개월 + 정규직 8개월 지원
인턴 3개월 약정 시, 인턴 3개월 + 정규직 6개월 지원

- 인턴 : 정규직 전환 시 100만원, 근로 9개월 경과 시 200만원 지원

2 신청자격

○ **대상기업** :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제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사업자 등록증 기준** 소재지는 울주군, 업태는 제조업인 중소(중견)기업

※ 업태는 제조업이나 종목이 식료품 제조인 경우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한함

○ **지원제외기업**

-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산업현장이 없는 기업체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인턴근무 중 인위적 감원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이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지방세 체납 기업
- 신청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기타 인턴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인턴자격** : 인턴 신청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인턴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가입자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 인턴 참여 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전환된 날부터 참여 자격 배제

-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 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단, 본인의 귀책 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당해 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재참여 가능

- 본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참여 중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취업지원금을 모두 받은 자 : 2년간 사업 참여 제한(퇴사 사유 불문)

· 정규직 전환 시 지원금(100만원)을 받은 자

(개인사정 및 본인 귀책사유 퇴사자) 퇴사 후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회사사정 퇴사자) 당해 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재참여 가능

단, 재참여하는 자는 정규직 전환 시 취업지원금 100만원만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인턴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채용예정인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인턴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자

○ 근로조건

- **인턴기간**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함

※ 약정체결 이후에도 기업 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단축 가능

- **인턴급여** : 인턴 약정서에 의하여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체결할 수 있고 기업은 인턴에게 월 최저임금(2,060,740원)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함 (4대 보험 및 세금공제 전 금액 포함. 단, 교통비, 상여금 등 제외)
- **4대 보험** :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3 사업 참여 절차

○ 사업 참여 절차

참가신청 및 기업승인	⇒	인턴사원 모집선발	⇒	참가신청 및 명단통보	⇒	인턴사원 채용승인	⇒	근로계약 및 근무개시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기업 ↔ 군		기업		인턴/기업 → 군		군 → 기업		기업 ↔ 인턴		기업 → 군		군 → 기업

○ **인턴채용** : 울주군 일자리안내지원센터를 통한 알선 또는 자체 채용

○ **유의사항**

- 참여기업 승인 이후 인턴을 채용하여야 함
- 채용예정자 선정 즉시(근로개시 이전) 울주군으로 명단 통보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급박한 채용 등) 근로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 가능

4 참여기업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제출서류**

- **기업 참가신청(최초1회)** : 참가신청서(기업용)[서식1], 협약서[서식2],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조회, 기타 적격여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서류(필요시 추가 안내)
- **인턴 참가신청 및 명단 통보(수시)** : 신청서(인턴용)[서식3], 인턴채용 예정자 명단 통보서[서식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조회, 참여자 초본,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인턴 약정서[서식5]

○ **제출방법** : 전자메일(ulju535659@korea.kr),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 수 처** : 울주군 일자리지원과 청년지원팀(☎052-204-1363)

5 신청서식

【서식 1】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참가신청서(기업용)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지사(지점)명	
대 표 자			사업장관리번호	
소 재 지				
피 보 험 자 수	본사		지사(지점)	명
업 종, 업 태			담당부서/담당자	
연 락 처			FAX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메일	

상기 사업장은 『울주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인턴지원 중단,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연번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3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4	산업현장이 없는 기업체 등 고용관계 유지 부적합 사업장		
5	신청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6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7	인턴근무중 인위적 감원을 한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또는 이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8	지방세 체납기업 여부		

위와 같이 청년인턴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대표자) : _____ (직인날인)

울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
※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은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조회'로 대체 가능

【서식 2】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울주군”이라 한다)과 ○○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이 『울주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이하 “인턴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울주군의 채용승인일)부터 참여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인턴의 근로조건) ① 인턴의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약정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정한 인턴약정서에 따른다.

② 참여기업은 인턴과 상호합의가 있을 경우, 시행지침의 범위 내에서 울주군의 승인을 얻어 인턴약정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실시기업의 협력의무) 울주군은 인턴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에게 운영지침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조(인턴 운영상황의 통보) 참여기업은 인턴사업 운영실적을 울주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울주군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원금 지급) ① 울주군은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원금으로 참여기업이 인턴에게 매월 고정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최저임금 이상)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의거 매월단위로 지급한다.

② 울주군은 참여기업과 인턴참여자 사이에 인턴약정이 해지되거나, 인턴참여자가 중도에 인턴근무를 포기한 경우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참여기업은 인턴근무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급여일에 인턴 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에 인턴약정서 및 출근부(또는 임금대장) 및 입금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울주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참여기업은 인턴에 대하여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인턴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제재) ① 울주군은 참여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울주군은 참여기업이 인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인턴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참여기업이 이 협약과 시행지침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울주군의 요구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인턴 중도포기 등 통보) 참여기업은 인턴기간 종료 전에 인턴이 중도 포기하거나, 중도에 인턴 약정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울주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정규직 채용전환) ① 참여기업은 울주군에 제출한 「인턴채용 예정자 명단 통보서」에 따라 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울주군에 제출한다.

제11조(점검 및 조치) ① 울주군은 인턴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에 대해 인턴사업 운영계획, 인턴약정 등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울주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시 참여기업이 인턴지원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 시행지침의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인턴 신규채용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에 의하고, 울주군과 참여기업의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경우 울주군의 해석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기업 대표 ○ ○ ○ (인)

【서식 3】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참가 신청서(인턴용)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자택전화		휴대폰	
		e-mail			

○ 인턴 참여자격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1.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지 여부(마지막학기 재학중 제외) □ 여 □부
2. 과거 인턴사업에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 스스로 그만둔 사실 □ 여 □부
3. 본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자 및 참여중 약정이 중도해지된 자 □ 여 □부
4.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여 □부
5.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예정이거나 근무중인 자 □ 여 □부
6.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가입자 또는 사업자 등록중인 자 □ 여 □부
7. 인턴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사실 □ 여 □부
8. 채용예정인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지 여부 □ 여 □부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1. 울주군은 '울주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인턴사업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등에 활용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타사업 중복지원여부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고용전산망, 일모아시스템 및 행정정보망에서 수집 및 지속 관리
2. 청년인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울주군은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울주군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년인턴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울주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울주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_____(인)

울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졸업직전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확인서

【서식 4】

인턴채용 예정자 명단 통보서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담 당 자		연 락 처	

※ 인턴채용한도는 상시근로자수(피보험자수)의 20%이내이며, 1기업 5인까지 가능함.

※ 본 통보서로 울주군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군청의 최종 확정 통보를 받아야 함.

※ 군청에서 기업과 인턴에 대해 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에 자격조회 및 적격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인턴지원대상 여부를 최종 확정하여 통보함.

인턴기간	20 . . ~ . . . (3개월)

근로조건	근무장소	
	임 금	월평균 원(기본급 원 + 제수당 원)
	근로시간	

☞ 급여는 군청 지원금(월80만원)을 포함, 공제전(세금 및 4대보험) 금액으로 작성.

정규직 전환계획	명

인턴 채용 예정자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부서	담당업무	월급여(원)	핸드폰연락처
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울주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인턴채용예정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직인

울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참여자 주민등록초본(현재주소), 사업주 가족 관계 증명서,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신청일 이전 3개월 전부터 조회),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세납세증명서 **※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은 '사업장 고용정보현황'으로 대체 가능**

【서식 5】

표준 인턴약정서

울주군이 지원하는「울주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실시기업 _____과(와) 인턴 _____이(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 內*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00*시 00분부터 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 13시 00분)*
   ※ 매일(월~금) -- 시간씩 연장근로 하는 것에 합의함(별도 가산임금 지급)
5. 근무일/휴일 : *요일 ~ 요일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
6. 휴가 :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7. 약정임금 : 월(일, 시간)급 _____ 원
   - 약정임금 구성항목: 기본급 _____원, _____원, _____원,
   - 임금계산기간 : 매월 ____일부터 ____일까지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8. 기 타
   -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확인 여부(18세미만인 경우) : *제출했음*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기 업) 사업체명 : ○○ (전화 : *000 - 0000*)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인 턴) 주 소 :
연 락 처 : *(h.p) 000 - 0000 - 0000*
성 명 : (서명)